독일의 농업경영체등록과 세제지원 체계

김 수 석*

Keywords
농업경영체(agricultural holding), 독일 농업경영체등록(German farm manager registration), 세제지원(tax reduction)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raw some implications from the German tax reduction program for agricultural holdings by examining its institutional configuration and operating system.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n agricultural holding under the tax law, several steps need to be taken in the registration process. A newly founded agricultural holding should join agricultural social insurances and register its establishment with the tax office. The registered business entity then can receive various benefits such as tax reduction. A significant implication of the German system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an agricultural holding under the tax law is that it not only clarifies the requirements of a legitimate agricultural holding but also provides the foundation for the efficient tax policies such as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차례

1. 서론
2. 독일의 조세법상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와 방향
3.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과 내용
4. 독일 농업경영체 세제지원 방식 및 내용
5. 시사점 및 결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서 론

농업경영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농업을 다른 일반 산업과 구분되는 특수산업으로 인정하여 세제상 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농업이 타 산업에 비해 생산조건상 불리한 면이 많고 자국 농업보호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외국의 선진국가들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러한 농업보호 및 육성정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업경영체의 인증기준이 확립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조세상의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먼저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기준을 보면,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여기서 농업인에 대한 규정은 ① 1,000m^2(300평)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 되어 있다(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다시 말해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농업경영체가 될 수 있고, 농업경영체가 되는 농업인 요건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누구나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농업경영체 인증 기준에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농업관련 과세 체계는 업종별 세제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작물재배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데, 부업이 아닌 축산업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그리고 농업부문에 세제지원이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원칙하에 감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원이 누락되기도 한다. 현행 농업부문 조세제도가 갖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이러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보다 일관성 있는 원칙하에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써 농업부문 조세제도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농업경영체등록제도는 농업경영체등록과 연관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이 연구는 독일의 농업경영체등록과 세제지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독일의 조세법상 농업경영체등록 절차와 방향

독일에서 농업경영체는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농업경영체를 다른 산업경영체와 조세행정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Förderrecht)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는 이를 인정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반면에,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는 임의등록 절차를 따른다. 하지만 임의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들은 지원법상의 등록제에도 등록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등록의 역사를 보면,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은 EU의 공동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것이지만,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은 독일의 고유의 등록제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은 1992년 EU에서 직불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통제시스템(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IACS)을 도입한 이후 이에 대한 회원국 차원의 법제화가 요청된 2004년에 독일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반면에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은 비록 등록요건에 대한 세부적 사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강화되는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농업경영체등록의 최초 기원은 1885년 농업산재보험이 법적 의무사항인 농업사회보험으로 도입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1] 따라서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은 독일 농업경영체등록의 근간이 된다 할 수 있다.

독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보험 가입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등록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의무적 등록과정은 모든 농업경영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체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다시 말해 취미농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경영체는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의무만 있지만,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는 부업농 및 주업농은 등록에 요구되는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1 동서독이 분리된 이후에는 1957년 서독에서 농업노령보험이 농업사회보험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으로 추가되었고, 1972년에는 농업의료보험이, 1995년에는 통일된 독일에서 농업요양보험이 등록요건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http://www.bundestag.de/dokumente/analysen/2012/Landwirtschaftliche_Sozialversicherung.pdf> 참조.

그림 1.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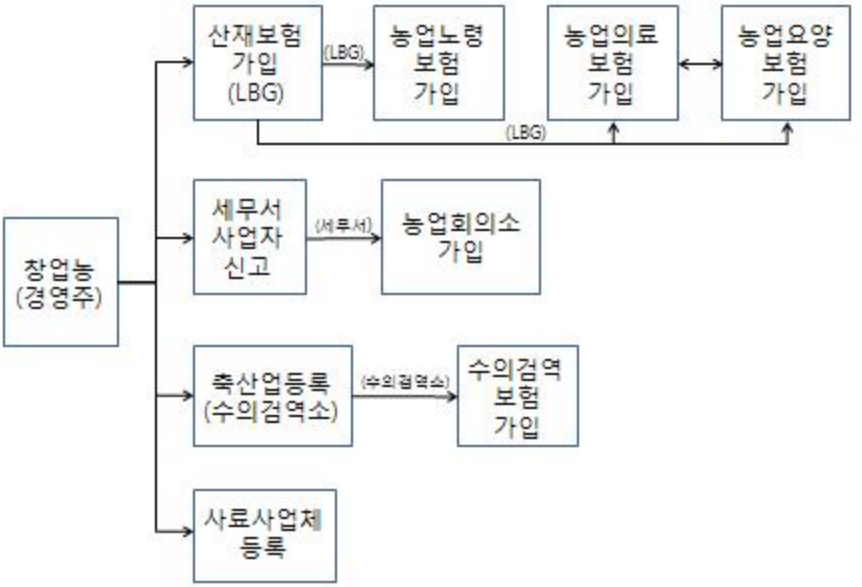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 농업경영주가 거쳐야 하는 신고·가입 및 등록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농업경영체를 창업하는 경영주는 먼저 농업직능조합(Landwirtschaftliche Berufsgenossenschaft: LBG)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나머지 3대 사회보험은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직능조합을 통해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② 농업경영주는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한다. 사업자 신고로 농장의 가치가 결정되고 과세대상으로 등록된다. 그리고 이 사업자신고를 통해 자동적으로 농업회의소 회원으로 가입된다.

③ 축산업을 전업 내지 겸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을 한다. 축산업등록을 통해 수의검역보험은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④ 사료를 자가용 혹은 판매용으로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하는 사업체는 이를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에 신고·등록한다.

이러한 등록절차를 거친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에 대해 부여하는 세제우대의 기본원칙 및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농림업을 일반 산업과는 구별되는 특수산업으로 인정하여 세제상의 특

례를 부여하고 있다. 농림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보다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농림업을 일반 산업과 구별되는 조세상의 특수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세제지원은 주업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농업 관련 사회보험 가입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들은 주업으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무가입자로 한다. 부업농은 주업으로 종사하는 비농업 분야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세제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소영농규모 설정도 주업농 지향과 연관이 있다 볼 수 있다.

셋째, 후술하는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이란 개념을 추가적인 조건으로 부가한 것은 지속가능한 건전한 농업을 육성·지원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일반 산업적 성격이 강한 축산업의 경우, 밀식사육에 의한 기업적 경영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지 않고 친환경적, 조방적 사육기반을 갖춘 축산경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이는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본회사적 농업법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러한 기본방향과 관련된다 할 수 있다.

넷째, 세제지원 대상은 농업생산 활동이 주된 것이고, 농산물 가공·유통과 관련된 서비스 활동은 농업생산 활동에 비해 보조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에 한정된다. 유통 및 가공 활동이 생산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생산활동에 비해 비중이 낮을 때 이를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농업생산 중심의 세제지원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독일의 농업경영체등록 과정과 내용

독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하나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 즉 조세법상의 농림업경영체[2]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건은 농업관련 사회보험 가입과 농림업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절차 속에서 요구되는 최소영농규모가 실질적인 등록기

---

2 독일에서 농업경영체(사업체)에 대한 규정은 거의 예외없이 임업경영체를 포함한 농림업경영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를 농림업경영체로 표현해도 실제로는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준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런 등록과정을 하나씩 세밀하게 분석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농업 관련 사회보험 가입

3.1.1. 산재보험 가입

모든 농림업사업체[3]는 먼저 농림업종사자를 위한 법적 산재보험 수행기관인 농업직능조합(LBG)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업직능조합의 산재보험 가입은 모든 농림업사업체의 의무사항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 산재보험과 별도로 이루어진다.[4]

산재보험대상자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도 보험대상자에 포함된다. 보험대상행위는 노동현장사고 및 이동사고와 직업병이 된다. 소요되는 재정적 재원은 부담할당절차에 따라 경영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조달하고, 피고용인은 어떠한 부담도 하지 않는다.

보험료의 책정은 주로 토지를 이용하는 농업과 임업의 경우에 전년도 5월 15일의 경영관계에 기초한 노동소요 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노동소요 산정은 다양한 형태의 토지이용 및 양축 형태가 ha당 혹은 가축수당 특정화된 산정단위로 계산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계산된 산정단위의 합계는 산정단위당 연간 보험단가를 곱하여 납입보험료 가액이 정해지고, 여기에다 기본보험료를 더하고 연방정부의 보조액을 감하여 실제 납입보험료의 크기가 확정된다.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축산사업체는 노동소요 산정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도출하지 않고 사업체의 특성 및 산재위험을 고려한 실제투하노동크기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한다.

---

3 여기서 농림업사업체로 표현한 이유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중에서 농림업경영체로의 인증에 필요한 의무사항을 이행한 사업체를 농림업경영체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4 농업직능조합의 산재보험 대상은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이나 영업행위 등으로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미농이나 소규모의 사업체도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특작이 아닌 경우, 0.25ha 이하 규모의 경종작물사업체는 보험가입이 면제된다. 그리고 생산물을 주로 자급자족 형태로 소비하고 특별한 노동력이 정기적으로나 상당한 규모로 투입되지 않는 텃밭 및 클라인가르텐은 토지이용생산에도 불구하고 농림업사업체로 간주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된다.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2012), p. 5 참조.

3.1.2. 농업노령보험(농업연금보험)

「농업인노령보험법(Gesetz über die Alterssicherung der Landwirte: ALG)」에 따라 실시되는 농업노령보험의 수행기관은 농업노령보험공단(Landwirtschaftliche Alterskasse: LAK)이다. 이 농업노령보험 가입 의무대상자는 토지경작을 하고 보험공단(LAK)에 의해 정해진 최소영농규모에 도달한 농림업 및 수산양식업 사업체가 된다. 그리고 내수면어업경영체와 양봉업체 및 양을 방목하는 사업체도 노령보험 의무대상자가 된다. 여기서 사업주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러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가 되는데, 여기에는 임차인과 경작권자도 포함된다.

농림업의 최소영농규모는 관할 농업노령보험공단(LAK)에서 확정하는데, 니데르작센 주의 보험공단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최소영농규모는 ① 8ha 규모의 (경종)농업, ② 2.2ha의 원예 및 특작, ③ 75ha의 임업으로 되어 있다.[5] 한편 내수면어업의 최소규모는 연간 120일의 노동소요이고 양봉업의 최소규모는 100개의 벌통, 양 방목의 최소영농규모는 큰 양 240마리를 무리로 사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2012, 8).[6]

순수한 취미농은 최소영농규모의 도달에도 불구하고 농업노령보험의 가입의무자가 되지 않는다. 취미농에 대한 증명은 쉽지 않은데, 통상적으로 농업경영체보조금과 같은 지원금에 대한 요청권리가 원칙적으로 취미농에게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업체가 취미농으로 간주되고 있다.

농업노령보험의 가입의무 대상자는 경영주와 그 배우자 및 해당 경영체에 주업으로 종사하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가족구성원이 된다. 가입의무에 대한 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① 정규적인 비농업소득이 월 4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② 실업수당의 대상이 되고 실업수당 대상자가 되기 전에 노령보험과 관련한 가입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③ 자녀 부양, 요양대상자에 대한 요양 혹은 군(대체)복무 완료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연금보험 가입의무자가 된 경우
④ 만 65세까지가 될 때까지 노령연금 수령에 요구되는 15년간의 (최소)대기기간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5]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적으로 다른 최소영농규모가 과도기적으로 통용되었지만, 이후로 창업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새로 시행되는 규정만 적용된다.

[6] 양 방목 이외의 다른 축산은 농업노령보험 가입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농업노령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조정되는데, 경영주 및 배우자에 대한 보험료가 2012년에 각각 월 224유로, 그리고 다른 가족종사자의 보험료가 그 절반(112유로)으로 책정되어 있다.[7]

농업노령보험과 관련해서는 경영체가 보험공단(LAK)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농림업사업체가 창업 시 농업직능조합(LBG)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것으로 해서 신고한 사업체가 최소영농규모에 도달하는 경우에 신고 내용이 농업직능조합으로부터 농업노령보험공단으로 자동적으로 전달된다.

3.1.3. 농업의료보험

「농업인을 위한 의료보험 두 번째 법(Zweites Gesetz über die Krankenversicherung für Landwirte, 약칭 KVLG 1989)」에 의해 실시되는 농업의료보험의 수행기관은 농업의료보험공단(Landwirtschaftliche Krankenkasse: LKK)이 된다. 농업의료보험의 가입의무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앞서 서술한 농업노령보험의 가입대상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농업인의 비농업소득 크기가 법적으로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최소영농규모가 50%는 넘지만 100%에 도달하지 않은 사업체의 농업인도 가입할 수 있다.

해당 경영체에 주업으로 종사하는 가족구성원[8]도 보험가입의무대상자가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에서 앞서 언급한 농업노령보험의 가입조건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보면, 먼저 가족구성원의 범위에서 3촌 관계의 친족과 2촌 관계의 척족이 포함된다.[9] 연령이 만 15세 이상이거나 농업경영체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주업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영주의 배우자와 자녀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

7 낮은 소득 수준이라는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보험료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소득의 하한선은 개인의 경우 연 15,500유로이고, 부부의 경우 연 31,000유로이다. 보조금은 소득 하한선 이하의 소득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사업주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월 9~134유로가, 그리고 가족종사자에게는 월 4.5~67유로가 지원된다.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2012), p. 8 참조.

8 주업으로 종사한다는 것은 주당 노동시간이 최소 20시간이 되거나 종사활동이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 때를 의미한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받는 급료가 월 4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가 된다.

9 친족은 부모형제 등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가족관계를 말하고 척족은 장인·장모 및 사위 등 배우자의 부모형제 또는 자녀의 배우자와 갖는 인척관계를 말한다. 독일에서 사용하는 촌수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가족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의료보험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① 주업으로 종사하는 비농업 사업이 있거나 ② 보수를 받고 고용인으로 종사하여 농업 이외의 다른 의료보험의 가입의무가 성립하는 경우가 된다.

농업의료보험의 가입신고는 농업노령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농림업사업체가 창업 시 농업직능조합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족된다. 즉, 신고한 사업체가 최소영농규모에 도달하는 경우에 신고 내용이 농업직능조합으로부터 농업의료보험공단으로 자동적으로 전달된다.

농업의료보험의 보험료 등급은 20개가 있는데, 등급구분의 근거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이른바 '교정된 토지가치'(korrigierter Flächenwert)에 따라 이루어진다. 교정된 토지가치는 경작하는 토지에 사업체가 위치한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의 헥타르 가치(1ha의 토지점수)를 승수로 곱하여 도출된 토지가치에 대해, 다시 관련된 특정한 소득관계에 상응하는 연계가치(Beziehungwert)를 승수로 곱해 산출한다.[10]

주업으로 종사하는 가족구성원의 보험료는 만 18세 이상인 경우 사업주 보험료의 절반이 되고,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가족구성원 보험료는 경영주 보험료의 1/4로 된다. 직업훈련을 받는 교육생의 보험료도 사업주 보험료의 1/4이 되고, 받는 급료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 가족구성원과 훈련생의 의료보험료는 경영주가 부담한다.

3.1.4. 농업요양보험

「사회법전 XI」(Sozialgesetzbuch XI)에 의한 사회요양보험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농업요양보험의 수행기관은 농업요양보험공단(Landwirtschaftliche Pflegekasse: LPK)이고, 농업요양보험의 근거 및 기초는 기본적으로 농업의료보험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농업의료보험의 실시요령이 대부분 농업요양보험에 적용된다.

농업요양보험의 보험료는 농업경영주와 가족구성원종사자에 대해 의료보험료에 추가적으로 부가하는 형태로 부과된다. 추가적 부가되는 요양보험료는 2012년의 경우 농업의료보험료의 14.22%로 결정되어 있다. 다만 만 23세 이상의 대상자가 중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농업의료보험료의 12.6%를 요양보험료로 한다.

---

10 니데르작센 주의 농업의료보험공단에서는 2012년에 최저 월 60.89유로와 최고 월 487.83유로 구간에 20개 보험료 등급을 설정해 놓고 있다.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2012), p. 10 참조.

3.2. 세무서 신고

새로 창업한 농림업사업체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창업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과세대상 파악을 위한 설문의 응답을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은 ① 창업 후 사업자로 신고하는 것과 ② 농장의 가치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이 때 농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다. 신고한 사업체에게는 조세번호(Steuernummer)가 교부된다.

3.2.1. 농장의 통합가치 확정

자기 소유의 농장에서 자가경영을 시작하는 경우에 창업자는 농림업 자산 확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는 해당 농장의 통합가치(Einheitswert)를 확정하여 통보한다. 통합가치는 농지의 경영가치(Wirtschaftswet)와 농장가옥가치를 합산한 것인데, 경영가치는 거래가치가 아닌 수익가치로 평가된 농지의 가치이고, 농장가옥가치는 수익가치로 평가된 (농지 이외) 건축물 및 대지의 가치를 말한다.

농장의 통합가치는 각종 부담금 크기 결정 및 농업경영체의 등급 구분의 근거가 된다. 즉 통합가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① 토지세 산정의 근거가 된다.
② 수리조합 및 농지조합의 회비 결정의 근거가 된다.
③ 농업회의소 및 각종 농업직능단체의 회비 결정의 근거가 된다.
④ 부기 기장 의무의 경계 설정 및 평균요율에 의한 이윤(추정) 조사의 근거가 된다.
⑤ 「호프법」에 의한 농장상속 시 공동상속인에 대한 보상 크기 결정의 근거가 되고, 농장의 매도 및 양도 시 소규모 농림업경영체 경계 설정의 근거가 된다.
⑥ 농지임차료 및 경지정리사업의 교환가치 결정의 근거가 된다.

3.2.2. 부기 기장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또는 이윤을 산출하거나 농지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농업인)는 부기 기장의 의무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 ① 농림업의 매출이 연간 50만 유로가 넘거나, ② 농림업의 이윤이 연간 5만 유로가 넘을 때, ③ 또는 농지의 경영가치(임차지 포함)가 25,000유로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 경영체는 부기 기장을 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세무서는 기장 의무를 통지한다.

3.3. 농업회의소 가입

다음으로 농업회의소가 있는 주에서는 창업농이 「농업회의소법」에 따라 농업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독일의 농업회의소(Landwirtschaftskammer)는 주(州)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인 자치기구로서 직업교육과 농업경영 지도상담을 고유업무로 하고, 주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농림사업의 집행을 수탁업무로 하고 있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들이 임의로 창설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 주 정부에 의해 설치법이 제정되어야만 창설될 수 있다. 현재 독일에서 농업회의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서독지역 7개 주인데, 이들 주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니데르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알란트, 함부르크, 브레멘이다.

농림업경영체의 창업 절차와 관련하여 예컨대 농업회의소가 있는 니데르작센 주의 경우 창업농은 「농업회의소법(Gesetz über Landwirtschaftskammer)」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회원자격은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회원 중 토지소유자들은 농업회의소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들은 매년 10월 25일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 크기 결정의 근거는 농장의 통합가치가 된다.[11] 회비 크기 결정 및 징수 그리고 농업회의소로 전달 등의 사무는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3.4. 축산경영체 신고 및 등록

축산업을 하는 양축자는 축산업등록을 하고 수의검역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4.1. 축산업등록

수의검역보험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가축은 「가축거래령(Viehverkehrsverordnung)

---

11 니데르작센 농업회의소에서는 2012년 회비를 농장통합가치의 0.9%로 정했다. 다만 농장통합가치가 1,000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한다.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2012), p 12 참조.

」에 따라 수의검역기관에 신고·등록해야 한다.[12] 신고는 사육 개시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신고 내용은 ① 양축자의 이름 및 주소, ②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 ③ 사육하는 지역 및 위치, ④ 사육 개시일자가 된다. 관할 관청은 시·군 단위로 소재한 수의검역소가 되는데, 수의검역소는 축산업 신고·등록의 지역창구(사무소)로 기능한다. 수의검역소는 축산업등록정보를 받아 이를 농업회의소를 통해 주(州)농업데이터은행[13]에 전달한다. 신고된 사육정보는 중앙등록시스템에 의해 파악되어 양축자에게 축산업등록번호가 발부된다. 「가축거래령」은 개체별로 등록하는 소와, 사육두수를 등록하고 축산업등록표시를 부착하게 하는 말, 돼지, 양, 염소에 대한 규정을 구비하고 있다.

3.4.2. 수의검역보험 가입

소, 돼지, 말, 양, 염소와 가금류를 사육하는 영농행위는 원칙적으로 「가축거래령」과 결부되어 있는「수의검역법(Tierseuchengesetz)」에 따라 수의검역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 가축이 양축자의 소유인지 아닌지, 어떤 목적, 어느 규모로 사육하는지, 가축사육이 토지경작이 연관이 있는지 아닌지 등의 사실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신고 기간 및 신고 내용은 축산업등록과 동일하고, 수의검역보험공단에 하는 첫 번째 신고는 수의검역소에 하는 축산업등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14]

수의검역보험공단에 신고한 후 양축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계산은 가축사육규모로 하는데, 첫 등록 이후에는 매년 1월 3일을 조사일로 해서 이 때의 사육두수를 근거로 한다. 보험료 크기는 보험정관에 정해져 있는데, 그 단위로는 가축당 및 해당 연도(연도별)가 되지만, 가축의 종류와 수의위생상태 또한 보험료 크기 결정의 고려 대상이 된다.[15]

---

12 신고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양, 염소, 닭, 오리, 거위, 꿩, 뿔닭, 자고, 비둘기, 칠면조, 메추라기이다.「가축거래령」제26조 참조.

13 니데르작센 주에서는 축산통합정보시스템(Vereinigte Informationssysteme Tierhaltung: VIT)에 전달된다.

14 다만 소에 대한 사육정보는 생산이력제 때문에 수의검역보험공단이 아니라 가축생산이력정보시스템(Herkunftssicherungs- und informationssystem für Tiere, HIT) 데이터은행이 관리하는데, HIT 데이터은행은 매년 1월 3일~17일 사이에 소에 대한 사육정보를 수의검역보험공단에 알려준다.

15 2012년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험료의 크기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2012, 13).

3.5. 사료사업체 등록

마지막으로 사료의 생산 및 가공·유통에 관계하는 사업체(사료사업체)는 EU의「사료위생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관할 관청(소비자보호및식품안정청)에 신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사료사업체는 사료의 생산, 가공, 저장 또는 유통에 참여하는 사업체 모두를 말하는데,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사료를 생산·가공 또는 저장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사료사업체 등록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사료사업체는 EU 규정에 의거한 사료위생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 독일 농업경영체 세제지원 방식 및 내용

4.1. 세제지원 방식

독일에서 농업경영체가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법상의 농림업경영체 인증을 받고 다음으로 농업경영체의 영농활동이 조세법상의 농림업에 해당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의 영농생산활동은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지만, 해당 농업경영체의 농산물 가공·유통 활동이 영농생산활동에 비해 비중이 더 높게 되면 세제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4.1.1. 조세법상 농림업 개념

조세법상의 농림업은 개념적으로 일반 '산업활동(gewerbliche Tätigkeit)'과 구별되는

- 육계: 수(마리)당 0.0322유로
- 말: 두당 3유로
-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소: 두당 9유로
-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소: 두당 15유로
- 축산을 하는 경우 양축자에 대한 최소보험료가 있는데, 이에 따라 축산경영체는 최소 10유로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데, 농업경영체의 생산활동 중에도 '농림업 활동'에 속하지 않는 '산업활동'이 있다. 농업경영체의 활동 중 산업활동으로 분류되는 것은 ① 법인경영체(자본회사)의 생산활동과 ② 특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활동이 된다.

조세법상의 농림업은 일차적으로 작물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경영체 및 인적 회사[16]의 활동이 되고, 축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할 때 농림업 활동이 되고, 이를 초과하면 전체가 '산업활동'으로 간주된다(aid 2009, 12).

- 처음 20ha까지는 ha당 10 축산단위(Vieheinheit: VE) 준수
- 그 다음 10ha까지는 ha당 7 축산단위(VE) 준수
- 그 다음 20ha까지는 ha당 6 축산단위(VE) 준수
- 그 다음 50ha까지는 ha당 3 축산단위(VE) 준수
- 그 이상의 사육지에는 ha당 1.5 축산단위(VE) 준수

4.1.2. 농산물 가공·유통 활동 인정 범위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은 농림업 생산활동이 기본이 되지만, 유통 및 가공 활동이 생산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생산활동에 비해 비중에 낮을 때 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aid 2009, 13 이하).

① 농업경영체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하거나 유통업을 개설하여 파는 경우, 이 매출액을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한다.[17]

② 농산물의 가공 수준이 제1단계 가공(예를 들어, 밀가루 혹은 버터)에 머물 때는 농림업으로 인정하나, 제2단계 가공(예를 들어, 빵 혹은 소시지)은 산업활동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급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제공되는 제2단계의 가공 매출액이 연간 10,3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③ 다른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을 일부 구입하여 재판매한 순매출액이 경영체 순매출의 1/3 이하이거나 51,500유로 이하일 때는 유통업을 생산업에 포함된 하나의 사업체로 인정하지만, 그 이상일 때는 두 개의 별개 사업체로 간주한다.

④ 개설된 유통업이 별개의 사업체인 경우, 자가생산한 농산물의 매출액이 40% 이하

---

16 독일에서 인적 회사는 상법 상의 회사 중에서 무한책임사원이 포함되어 있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그리고 민법 상의 회사를 말한다. 인적 회사는 개인들의 결사체로 간주되어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7 2009년 이전에는 개설한 유통업을 통한 매출이 자가생산한 농산물의 총 매출액의 40% 이하일 때, 전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했다.

이고, 다른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하여 재판매한 매출액이 경영체 총매출의 30% 이상일 때, 개설된 유통업을 '산업활동'으로 간주한다.

⑤ 유통업이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된 경우에도, 개설된 유통업을 통한 자가생산 농산물의 매출액이 (생산업과 유통업을 합한) 총 매출액의 40% 이상 되거나, 40% 이하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농림업으로 인정한다.

⑥ 농기계수탁을 통해 얻은 수입이 경영체 총 매출의 1/3을 초과하지 않고 금액으로도 51,500유로를 넘지 않을 때, 이것 또한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⑦ 이러한 규정을 초과하는 산업활동 부분이 발생하면, 전체 활동이 산업활동으로 간주되고 그 수입도 산업활동수입으로 처리된다.

4.2. 세제지원 내용

독일에서 농업경영체의 영농 활동이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되면, 농림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과세상의 우대가 주어진다.[18]

4.2.1. 소득세

독일에서 소득세는 일곱 가지 소득원천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즉, 소득세 대상은 세 가지 유형의 이윤과 네 가지 유형의 잉여소득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영체 수입에서 도출되는 이윤은 ① 농림업, ② 일반 산업, ③ 자영업의 경제활동으로 유형화 되고, 개인 수입에서 도출되는 잉여소득은 ① 비자영노동, ② 자본자산, ③ 임대사업, ④ 기타 수입으로 유형화 된다.

소득세 부과에서 농림업 활동이 우대받는 부분은 특별공제에 있다. 농림업 공제는 개인의 연간소득이 30,7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670유로,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61,4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1,340유로를 공제한다.

---

18 독일에서 농림식품 분야의 조세감면 크기는 2011년 6억400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림업 국내총생산의 2.8%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2013), *24. Subventionsbericht* (Kurzfasung), p. 19 참조.

4.2.2. 산업세

산업세(Gewerbesteuer)는 지방세로서 산업활동을 하는 산업경영체에 부과된다. 산업경영체는 회사의 법적 형태와 경제활동 성격에 따라 규정되는데, 법인인 자본회사는 사업성격에 상관없이 산업경영체가 되고, 인적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는 경영하는 사업 성격에 따라 산업경영체 여부가 결정된다.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인적 회사는 산업경영체가 아니지만, 농림업 이외 산업활동에서 얻은 연간수입이 10,300유로 이상이면 산업경영체로 분류된다.

조세법상 농림업 활동에 종사하는 농림업경영체는 산업세가 면제된다.

4.2.3. 토지세

토지세(Grundsteuer)는 산업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지방세로서 농지 및 임야에 부과되는 것과 여타 토지에 부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농지 및 임야에 부과하는 토지세는 농지 및 농장가옥의 수익가치로 산정되는 통합가치(Einheitswert)로 부과된다. 토지세의 대상토지에 대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그 가치를 실제가격에 근거한 거래가치로 산정하지 않고 일종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수익가치 내지 통합가치로 산정하면 평가차액 만큼의 감세(과세표준 삭감)효과를 갖는다.

4.2.4. 상속 및 증여세

농림업자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는 상속재산을 농장의 통합가치(농지의 수익가치 및 농업용 건축물의 수익가치)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농지의 수익가치는 해당 필지의 최근 3년간의 순수익(표준소득) 평균치를 근거로 이를 5.5%의 이자율로 자본화(18.6배)하여 얻는다. 그런데 수익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나오거나 마이너스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최소가치가 설정되는데, 이 최소가치는 임차료를 자본화(18.6배)하여 얻는다. 수익가치가 최소가치보다 적을 때는 최소가치를 농지의 가치로 한다.

농장가옥과 농업용 건축물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 후 10년 동안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다. 하지만 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이들 건축물을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과세한다.

4.2.5. 부가가치세

‘매출세(Umsatzsteuer)’로 명명되는 독일의 부가가치세 중에서 농림업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은 정규방식과 평균방식으로 구성된다. 정규과세방식을 보면, 일반적인 상품 거래에서 통상 세율이 19%인데 반해 농산물과 생필품의 부가가치세율은 7%로 되고, 여기에서 농업경영체가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와 판매한 농산물의 부가가치세의 차액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진다. 즉, 판매한 농산물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총액이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총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세무서에 추가로 납부하고,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표 1>과 같은 경우에 해당 농업경영체는 300유로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평균과세방식은 정규방식처럼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림업경영체가 판매하는 상품에 (평균화된) 10.7%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법인이 아닌 일반 농업경영체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있어서 정규방식과 평균방식 중 양자택일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 농림업경영체는 (인적회사가 아닌) 법인경영체, 임대인, 자가생산하지 않은 농산물 판매업체가 된다.[19]

표 1. 농림업 부가가치세 정규과세 정산방식

단위: 유로, %

구 분	원가	세율	세액	거래가액
영농자재 구입	15,000	19	2,850	17,850
곡물 판매	45,000	7	3,150	48,150
부가가치세 차액			300	

자료: aid(2009), p. 33

그리고 매출이 소규모인 농림업경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난 해 매출이 17,500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5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2.6. 차량세 면제

농림업경영체가 「차량세법」(Kraftfahrzeugsteuergesetz) 제3조 제7호에 따라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세를 면제받는다. 면세대상이 되는 차량은 트랙터와 차량트레일

19 정규방식에는 부기기장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평균방식에는 간이계산서 형태도 허용된다.

러 및 특수차량이 된다.

면세의 전제조건은 이러한 조세감면이 ①농림업경영체의 이윤추구에 기여하고, ②면세대상차량이 전적으로 농림업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0]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하고, 신청서류는 차량면허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4.2.7. 유류세 감면

농림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유류세의 감면이 이루어지는데, 디젤유는 일부 감면되고 바이오디젤 및 식물성 오일은 전액 감면된다.

「에너지세법(Energiesteuergesetz)」 제2조에 따라 디젤유와 바이오디젤 및 식물성 오일의 에너지세율은 리터당 47.04센트이다. 여기서 바이오디젤유와 식물성 오일에 대해서는「에너지세법」 제5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세율이 바이오디젤유는 리터당 18.596센트, 식물성 오일은 리터당 18.455센트가 된다.

농림업경영체에 대한 유류세 감면은「에너지세법」 제54조에 따라 디젤유의 경우 리터당 21.48센트의 감면이 이루어져 유류세가 리터당 25.56센트가 되고, 바이오디젤 및 식물성 오일은 전액 면제된다.

5. 시사점 및 결론

5.1. 시사점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연구의 주된 내용은 하나의 농업 관련 사업체가 어떤 절차 및 과정을 거쳐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증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인증된 농업경영체에게는 어떠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일반 산업체와 다른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농업경영체 인증과 관련한 제도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하는 세제지원 관련 제도까지 비교분석하기는 이르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부분은 농업경영체 인증기준, 즉 농업경영체등록과 관련한 내용에 집중하기로 한다.

---

20 부업농의 경우에는 영농활동이 주업농과 비교할 정도가 될 때 조세감면이 이루어진다.

독일에서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인증을 규정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는 그 핵심내용을 ① 하나의 사업체로서 농업경영체 개념, ② 최소영농규모, ③ 사회보험 가입, ④ 조세관련 사업자등록에 두고 있다. 이런 핵심요건과 관련한 우리나라 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체계 내에서 농업경영체 개념은 농업인이 바로 농업경영체로 간주되고 농업인의 기준이 지나치게 간단하면서 동시에 확인하기 쉽지 않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된다. 농업인에 대한 규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인을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 한 규정인데, 이것은 90일 이상 종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65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고시하여 '90일 이상 영농종사' 규정은 농업경영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와 경영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농업종사자에 대한 것으로 적용범위를 구체화했다(고시 제4조 제3호). 다시 말해 이 규정은 농업경영주를 제외한 농업경영체에 속한 (보조)인력에 대한 농업인 인증규정으로 한 것이다. 이로써 당시 현안이 되었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 개념은 농업인과 구별되는 하나의 사업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 개념은 사업체 개념을 내포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체 개념의 핵심에는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농업경영체는 단순한 농업인이 아니라 물적 조건을 구비한 농업경영주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사업체 내지 경영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현행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은 농업인이 바로 농업경영체로 간주되는 개념상의 문제도 있지만, 농업인이 되는 조건, 즉 최소영농규모에 대한 규율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경종농업과 축산과 같은 업종별 최소영농규모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해 연간 농산물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란 조건으로 쉽게 농업경영체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이것은 현행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이 업종별 최소영농규모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인증 기준에 대해서는 인증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이 요건이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최소영농규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영농규모로 기능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을 「농지법」상의 농업인 규정[21]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새롭게 구성해보면 이는

---

[21]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농업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① 1,000m^2 이상 농지를 경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① 경종농업경영체: 1,000m² 이상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 시설농업경영체: 농지에 330m² 이상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축산경영체: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셋째, 농업 관련 사회보험 가입은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업경영체등록과 연계되는 의무제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단지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노동력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만 사회보험 가입이 강제되어있는 수준이다. 이것은 결국 타인노동력을 고용하지 않는 가족농 형태의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경영체를 하나의 사업체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으로서 농업관련 사회보험 가입을 산재보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농업경영체 인증요건을 체계화할 때 가장 중요한 인증요건은 조세관련 사업자등록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자등록을 농업경영체 인증요건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은 농민단체들의 반대 등을 차치하더라도 현행 제도상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에서 작물재배업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조세행정상의 효율성 차원[22]과 작물재배농가에 대한 입증 수단 미비[23] 등을 사유로 제외되었다(한국세무학회 2006, 14). 그런데 작물재배업을 조세상의 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24] 합리성 세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누릴 수 없게 한다.[25] 그리고 농업경영체등록이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증되어 세제상

작·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영농종사자, ② 농지에 330m² 이상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22 작물재배업의 소득세는 먼저 국세인 소득세에서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로 변경되었고, 농업소득세는 납부되는 세수에 비해 행정비용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2005년부터 5년간 납부유예가 이루어졌다가 2010년 폐지되었다.

23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는 작물재배업의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대상 제외 사유 중 하나인데, 이는 작물재배업의 소득세 사업자등록 대상 제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24 작물재배업 농가는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소매업 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이럴 경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에서 농업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수석 등(2011), p. 79 이하 참조.

의 혜택을 받는 독일의 제도처럼 농업경영체등록과 세제혜택을 연관시키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작물재배업에 대한 조세상의 사업자등록은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어서 작물재배업을 포함한 농업 업종 전체의 사업자등록이 농업경영체 인증요건의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농업경영체 인증 기준으로서의 사업자등록이 농업경영체에 대한 세제지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5.2. 결론

독일의 조세법상 농업경영체등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보다 독일이 농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 기준을 확립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제지원은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흐름을 같이하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은 농업경영체 기준 및 농업경영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아직 불완전하고 흠결이 많은 우리나라 제도가 문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갈 때 하나의 모델 내지 고려사항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경영체에 대한 세제지원 원칙 수립 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첫째, 독일은 농업을 일반 산업과는 구별되는 특수산업으로 인정하여 세제상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도 이러한 원칙하에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지원체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는 현행 지원방식을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산업과 구별되는 조세법상의 농(림)업 및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개념 정립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독일의 세제지원은 주업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세제지원 방향도 주업농이 주된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업농 중심의 세제지원의 방향이 정립되면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인증요건 중 하나인 최소영농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독일에서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이란 개념을 세제지원의 요건으로 추가한 것은 밀식사육에 의한 기업적 경영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지 않고 친환경적, 조방적

---

25 예컨대 현재 빈곤대책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대상이 되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미복,김수석(2011), p 128 이하 참조.

사육기반을 갖춘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독일의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과 같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독일에서 세제지원 대상은 농업생산 활동이 주된 것이고, 농산물 가공·유통과 관련된 서비스 활동은 농업생산 활동에 비해 보조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에 한정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농업생산 활동 중심의 세제지원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내용에 속한다.

참고 문헌

김미복, 김수석. 2011.「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2013.「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시스템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등. 2011.「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내원 등. 2006.「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상곤 등. 2010.「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등. 2011.「축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세무학회. 2006.「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

Auswertungs- und Informationsdienst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aid). 1998. *Kennzeichung und Registrierung von Rindern.* Bonn.

aid. 1999. *Das Herkunftssicherungs- und Informationssystem für Rinder.* Bonn.

aid. 2006. *Management der Zahlungsansprüche in der Zentralen InVeKos-Datenbank.* Bonn

aid. 2009. *Besteuerung der Land- und Forstwirtschaft.* Bonn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Finanzen. 2009. *Die Erbschaft- und Schenkungsteuer.* München.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Finanzen. 2009. *Steuertipps für Land- und Forstwirte.* München.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2013. *24. Subventionsbericht.*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z (BMELV). 2011. *Die wirtschaftliche Lage der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 (Wirtschaftsjahr 2009/10). Bonn.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z (BMELV). 2011. *Neuregelung der Grundsteuer.* Bonn.

European Agri-Nutri Trade Center(EATC). 2000. *Taxation of Agriculture in Europe.* Deventer.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2012. Gesetzliche Vorgaben für die Gründung eines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s. Odenburg.

Parsche, Rüdiger and Matthias Steinherr. 1995. *Besteuerung der Land- und Forstwirtschaft in ausgewählten EU-Partnerländern.* ifo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München.

(법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65호’「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nergiesteuergesetz (에너지세법)
Gesetz über die Alterssicherung der Landwirte (농업인노령보험법)
Gesetz über Landwirtschaftskammer (니데르작센 농업회의소법)
Kraftfahrzeugsteuergesetz (차량세법)
Regulation (EC) No 183/2005 of the Council (EU의 사료위생법)
Sozialgesetzbuch XI (사회법전)
Tierseuchengesetz (수의검역법)
Viehverkehrsverordnung (가축거래령)
Zweites Gesetz über die Krankenversicherung für Landwirte (농업인 의료보험 두 번째 법)

(web 사이트)
<http://www.bundestag.de/dokumente/analysen/2012/Landwirtschaftliche_Sozialversicherung.pdf>

원고 접수일: 2013년 4월 19일
원고 심사일: 2013년 6월 20일
심사 완료일: 2013년 10월 7일